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9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2. 2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2. 2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3. 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 나.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0인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제1·2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 라.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결사항은 군 공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범군민 재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 재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5. 1. 13자로 공포·시행하고, 지난 1.28에는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금년 3월 중순경에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전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3월중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범군민 재자리 찾기 운동”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범군민 재자리 찾기 운동 추진방향과 조례 제정배경, 조례안 제3조(참여범위), 제4조(지원),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9조 제3항(위원회 전체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조례제정 배경과 재정적 지원 범위는?

● 답 :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의회에서 발의로 제정하여 도 특수시책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정도는 가능하나 그 이외 지원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문 :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

● 답 : 경상남도에서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전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지시가 2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추진방법은 행정기관, 언론사,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을 총 망라하여 군민의식을 선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세부추진 과제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문 :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김대중 정부당시 “제2의 전국 범군민 추진 위원회 설치조례”와 유사하지 않는가?

● 답 : 예, 일부 유사한점도 있다고 봅니다.

○ 문 : 경상남도 범도민 재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제9조 제3항에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재자리 찾기 운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 답 : 현재 “재자리 찾기 운동” 지원 관련 업무는 행정과 소관으로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보나, 차후에 업무에 다른 실과로 재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자리 찾기 운동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3.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